

총학생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구예술대학교 총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단결을 통한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권익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과 향상에 이바지 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의 친목에 관한 일
2. 회원의 권익옹호 및 공제후생에 관한 일
3. 모교의 발전향상에 관한 일
4.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관한 일

제4조(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대구, 경상북도내에 둔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학부졸업자(중퇴자포함)및 동대학원(설립후)졸업자로 한다.

제6조(특별회원) 본회의 특별회원은 모교의 현직교직원 및 전직교수로 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회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상벌) 회원에 대한 포상, 징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조직

제9조(지부조직) 본회에서는 각 학과별, 각 전공별로 지부동문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지부의 보고의무) 위 각 동문회는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총동창회에 보고 승인받아야 한다.

제11조(기구) 본회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총 회
2. 이 사 회
3. 상임이사회

[제1절 총 회]

제12조(총회기능) 총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심의, 의결
2. 결산의 인준
3. 회장단인준 및 상임이사, 이사, 감사 선출
4. 회칙개정
5. 기타 주요회무결정

제13조(총회소집) 총회는 정기 및 임시총회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2년주기로 2월중에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

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또는

회원 50명 이상이 목적을 명시하여 개최요구를 할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

제14조(소집공고)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장은 늦어도 총회개최 7일 이전에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임원에게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이사회]

제15조(이사회구성) 이사회는 제20조에 규정된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이사회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위임된 중요한 회무처리
2. 예산안의 심의 및 의결
3. 회장단 선거
4. 사무처장인준
5. 장학재단 이사인준
7. 기타 회무사항

제17조(이사회소집) 이사회는 매년 1회이상 회장이 소집한다. 상임이사 또는 이사 4분의 1이상이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회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회장은 임시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3절 상임이사회]

제18조(상임이사회 구성) 상임이사는 이사를 제외한 제20조에 규정된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상임이사회 기능) 상임이사회는 다음과 같다.

1. 이사회에서 위임된 일의 처리
2. 긴급을 요하는 일의 처리

제4장 임원

제20조(임원의 종류)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 장 : 1명
2. 부 회 장 : 3명 이내
3. 이 사 : 25명 이내(상임이사 약간명 포함)
4. 감 사 : 2명

제21조(임원선출)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기타 임원은 이사(상임이사포함)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22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 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와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23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선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4조(임기의 종료) 임원은 임기가 끝난 후에라도 그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25조(고문) 본회는 고문을 둘 수 있다.

제5장 위원회

제26조(위원회설치) 본회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이사회는 승인을

얻어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7조(위원회사업) 1. 전문위원회는 회원의권익옹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일을 한다.

2. 특별위원회는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특정사업을 추진한다.

3. 재산관리위원회는 재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 처리한다.

제28조(위원장 및 위원독촉) 1. 전문위원회는 회원의권익옹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일을 한다.

2. 특별위원회는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특정사업을 추진한다.

3. 재산관리위원회는 재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 처리한다.

각종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회원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며 위촉한 회장과 임기를 같이 한다.

제6장 장학재단

제29조(대구예술대학교 동창장학회) 국가사회에 이바지할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재단법인 대구예술대학교

동창장학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30조(이사장 및 이사선임) 대구예술대학교 동창장학회의 이사장은 회장이 겸임하며 이사는 회장이 위촉하여 총동창회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7장 사무처

제31조(사무처설치)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그 장은 사무국장이라 한다.

사무처에는 총무국, 회원국, 회보편집국을 두고 각 국에는 부장 및 차장 약간명을 둔다.

사무국장은 회장이 위촉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각 국장 및 상근부장과 차장은 사무국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하고 비상근부장 및 차장은 해당국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32조(사무관장) 사무처의 사무관장은 다음과 같다. 총무국은 총무, 기획, 전산화, 재무(예산, 결산 및 회계)동창장학회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회원국은 조직, 섭외, 친목, 회원권익옹호, 행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

다. 회보편집국은 동창회보와 동창회사
발간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8장 의사운영

제33조(의안작성) 회원총회 및 이사회의 의안은 사무처가 작성한다. 단, 회원10명이상이
이유를 명시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개최
7일 이전에 제안된 안건은 의안 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제34조(회의의 성립) 총회는 회원 33명 이상으로 성립하고 기타 모든 회의는 출석인원으
로 성립한다.

제35조(의결) 본 회칙에 의거한 의안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회원의과반수로 의결
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 의장이 결정한다.

제36조(회의록작성) 사무처는 회의결과를 회의록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장 재정

제37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연회비, 입회비, 임원회비, 찬조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총당
하며 이사회비는 선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8조(회비) 연회비, 임원회비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 정한다.

제39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개시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10장 회칙개정

제40조(회칙개정) 회칙개정은 회원 33명 이상의 발의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출
석회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의결한다.

부 칙

제41조 본 회칙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41조 본 회칙은 2005년 3월 21일부터 발효한다.